



제 402 호

# 법인설립허가증

1. 법인명칭 :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
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-25(2층)
3. 대표자
  - 가. 성명 : 김형식
  - 나. 생년월일 : 1941년 1월 23일
  - 다. 주소 : 서울시 송파구 잠실4동 진주아파트 16동 502호
4. 사업의 내용 :
  - 가. 모금가 및 모금활동의 표준 및 윤리성 확보
  - 나. 건전한 기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
  - 다. 도서, 출판 등 모금 지식 공유 및 확산 사업
  - 라. 모금 분야의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사업
  - 마.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금가 네트워크 강화 사업
  - 바. 모금 전문성 강화를 통한 비영리기관 역량강화 사업
  - 사. 모금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
  - 아.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

## 5. 허가조건 : 이면기재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.

2014년 5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

## 1. 허가조건

1. 「민법」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2.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  3.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  - 가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
    - 나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    - 다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  4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  - 가.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
    - 나.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  - 다.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5. 법인이 해산(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)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6.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

## 2. 변경사항

번호	변경일	내용	확인
1	2014. 05. 29.	법인설립허가	박귀현